

광주지방법원 2020. 6. 10 선고 2019나6069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0. 6. 10 선고 2019나60690 판결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. 7. 25 선고 2018가단6949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

담당변호사 서일석, 한재원, 김혜인

피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석

변론 종결2020. 5. 13.

판결 선고2020. 6. 10.

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. 7. 25. 선고 2018가단6949 판결

주 문

1.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가.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68,374,335원 및 이에 대해 2018. 8. 1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 및 대위변제금 청구는 청구취지를 확장하고,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나. 피고의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전남 신안군으로부터 'C 신축공사'(이하 '이 사건 신축공사'라 한다)를 도급받았다.

나. 원고는 2017. 5.경 주식회사 D(이하 'D'이라 한다)와 'D이 위 신축공사의 현장을 관리·운영한다'는 내용의 현장관리계약을 작성하였다.

다.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. 6. 8.자로 '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계약금액 156,000,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한다'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, 2017. 7. 5.자로 '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(이하 '이 사건 골조공사'라 한다)를 계약금액 258,170,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한다'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(이하 '이 사건 하도급계약서'라 한다).

라.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부대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. 10.말경 철수하였고, 2017. 12. 21.경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확약서'라 한다).

확약서

10월 노무비	27,929,920원
크레인	5,050,000원
펌프카	2,400,000원
G	3,250,000원
H	4,126,000원

위 사항은 골조투입비에서 미지급된 부분으로 42,755,920원 이외(10월 30일 이전) 추가된 금액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다.

상기 금액이외에 추가금액은 민형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.

마. 한편, 피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 대금으로 신안군으로부터 2017. 9. 6. 97,479,345원, 2017. 9. 25. 156,238,990원을 지급받았고, 원고로부터 2017. 6. 30. 66,000,000원, 2018. 1. 2. 27,500,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47,218,335원을 지급받았다.

바. 피고는 2017. 9. 7. 및 2017. 9. 27. D에게 위 돈 중 60,000,000원을 반환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 내지 5, 10호증, 을 제3, 8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제1심 증인 E의 증언,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- ① 이 사건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에 관한 당사자는 D이 아니라 원고이고, D은 현장관리를 맡았을 뿐이다. 그런데 위 하도급공사계약금은 258,170,000원임에도 불구하고, 피고는 신안군과 원고로부터 합계 287,218,335원(97,479,345원 + 156,238,990원 + 66,000,000원 + 27,500,000원 - 원고가 반환받은 60,000,000원)을 지급받았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지급 받은 29,048,335원(287,218,335원 - 258,170,000원)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- ② 또한,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타절하고 철수하면서 2017. 12. 21.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상 금액 합계 42,755,920원을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 그런데 원고가 위 금액 중

39,326,000원(크레인 5,500,000원 + 펌프카 2,200,000원 + G 27,500,000원 + H 4,126,000원)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를 하였으므로,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8,374,335원(부당이득금 29,048,335원 + 대위변제금 39,326,000원)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, D로부터 부대토목공사 및 이 사건 골조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(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일괄하도급을 주고, D은 피고에게 부대토목공사 및 이 사건 골조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는데,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일괄하도급이 불법이라서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이다).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잔여 공사비를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정산해야 할 금액을 D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바, 피고는 실제 하도급을 준 D과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,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다. 더욱이,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계산하면 오히려 이 사건 골조공사계약금액에 미치지 못한다.

②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면, D이 이 사건 확약서상 금액 42,755,920원을 부담하고 그 이외 추가된 금액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바, 원고가 위 확약서상 금액을 변제한 것은 D의 요청으로 지급한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.

3. 판단

가.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3쪽 12행에 '을 제14호증'을 추가하고, 제4쪽 제10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(제3쪽 11행부터 제4쪽 9행까지)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-추가하는 부분-

③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 I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, F은 위증으로 각 기소되었다.

[더욱이, 피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가 신안군 및

원고로부터 합계 347,218,335원(97,479,345원 + 156,238,990원 + 66,000,000원 + 27,500,000원)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, 위 돈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2018. 1. 2.자 27,500,000원,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60,000,000원(피고가 D에게 돌려 준 금액임), 피고가 위 60,000,000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세 6,000,000원을 공제하면, 피고가 실제 취득한 금액은 253,718,335원(347,218,335원 - 27,500,000원 - 60,000,000원 - 6,000,000원)으로 이 사건 골조공사계약금액인 258,170,000원보다 적다. 따라서 피고가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.]

나. 대위변제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

갑 제15, 16호증,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할 당시에 관련 업체에 42,755,920원의 금액을 미지급한 사실, 이에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고,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상 금액 42,755,920원 중 2018. 1. 2. H 4,126,000원, 2018. 2. 28. 펌프카 2,200,000원, 2018. 8. 22. 및 2018. 9. 19. 크레인 5,500,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(갑 제13,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18. 8. 17. G에 27,500,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위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이 피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할 당시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).

그러나 이 사건 확약서(을 제8호증)의 문구에는 '42,755,920원 이외 추가된 금액을 피고가 지급한다'고 기재되어 있으므로, 이 사건 확약서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42,755,92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앞서 본 증거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,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피고가 2017. 10.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타절하고 철수하면서 2017. 12. 21.경 D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한 점,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보여준 점, 이후 원고가 2018. 1. 2.경 피고에게 27,500,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확약서상 금액 중 2017. 10.분 노임을 해결한 점(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를 타절한 이후에 피고에게 위 돈을 보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), 원고가 피고의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돈은 대부분 이 사건

확약서가 작성된 직후에 요청받거나 지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확약서는 D이 피고의 채무 중 42,755,920원을 인수하고 그 외에 추가된 금액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, 원고는 D의 요청을 받거나 D을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

재판장판사조현호

판사황영희

판사정혜원